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6-114

제출년월일 : 2026. 11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차량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(안 제3조~제4조)

다. 지원대상 및 신청·결정(안 제5조~제6조)

라. 의무사항 및 홍보(안 제7조~제8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

2)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7조(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사업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고 (구비 100% 지원)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10. 15. ~ 2026. 11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증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지체·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차량용 보조기기”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」 별표 1에 따른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‘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’ 및 ‘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’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용 보조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

2.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증장애인

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 및 결정)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, 지원사업의 구체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의무사항) ① 지원대상자는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한 차량을 5년간

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구청장의 승인 없이 대상 차량 또는 차량용 보조기기를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.

제8조(홍보) 구청장은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고,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서식】 (앞쪽)

접수번호	

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자 일반 정보				
성 명		성 별	□ 남	□ 여
생년월일	년 월 일 (세)	장애유형	지체・뇌병변	
보호자 성명		신청인과의 관계		
주 소				
연 락 처	❶(신청인) ❷(보호자)	이 메 일		
소득기준	□ 차상위 초과	□ 차상위계층	□ 기초생활수급권자	
사회활동 (직업 등)	□ 무 직			
	□ 학 생 [학 교 명 :]			
	□ 직장인 [직 장 명 :]			
	□ 기 타 [내용기입 :]			
신청동기	*(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)*			
신청 보조기기 * 휠체어 리프트 또는 적재장치 중 선택	품목	기타 개조 또는 주문제작 내용(상세기재)		
유의사항 안내 ※ 소요비용 자체부담	✓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수리비용과 소모품 교체비용 ✓ 합리적 사유없이 기기를 임의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✓ 기기를 손망실한 경우 물품의 잔존가액 ✓ 대면 상담 및 평가 진행 시 반드시 참여			

본인은 위의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,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,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」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: [인]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(뒤쪽)

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(필수사항)

항 목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기간
신청인(보호자)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장애유형, 소득기준, 주소, 연락처	차량용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	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☐ 미동의 ☐

☐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(필수사항)

항 목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, 복지카드	차량용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	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☐ 미동의 ☐

☐ 민감정보 수집·이용(필수사항)

항 목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기간
장애유형 및 등급, 장애원인, 장애상태 등	차량용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	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☐ 미동의 ☐

☐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(필수사항)

제공받는 자(기관명)	제공 목적	제공 항목	보유기간
외부선정심사위원 차량용보조기기 지원업체	보조기기 서비스 실적, 관련정책 방향 수립, 외부 지원사업 심사 등	신청인(보호자)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장애유형 및 등급, 소득기준, 주소, 연락처, 신청보조기기 등	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

※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, 동의가 없는 경우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** 및 **개인정보 제3자 제공**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☐ 미동의 ☐

☐ 홍보를 위한 정보 활용(선택사항)

홍 보 처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기간
마포구청 홈페이지, SNS, 보도자료, 사례집 등	현장평가, 기기적용 사진촬영 등	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☐ 미동의 ☐

✓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보조기기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✓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
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인 또는 서명) 법정대리인 (인)

[개인정보 관리 책임자]

기관명	개인정보관리책임관	개인정보취급자	이메일	연락처
마포구	**과장	**주무관	****@****	02-3153-**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: 제4조(지원내용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비용추계기간: 2027. 1. ~ 2031. 12.

나. 1인 지원액 최대 10,000천원, 연간 4대 지원

다. 홍보비 및 심사위원 수당 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7년)	2차년도 (2028년)	3차년도 (2029년)	4차년도 (2030년)	5차년도 (2031년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구비	41,200	42,200	43,300	44,510	45,841	217,051
	소계(b)	41,200	42,200	43,300	44,510	45,841	217,051
□ 총 비용(a-b)		41,200	42,200	43,300	44,510	45,841	217,051

- 보조기기 지원품목 물가상승률 10% 반영

4. 재원조달 방안 : 구비 100%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
시비						
구비	41,200	42,200	43,300	44,510	45,841	217,051
합계	41,200	42,200	43,300	44,510	45,841	217,051

5. 덧붙이는 의견 :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 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복지국 장애인정책과 윤정옥 (☎ 02-3153-8883)